

#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28,983,838	45,869,515
일반회계	1,236,243,027	37,087,291
특별회계	292,740,811	8,782,224
공기업특별회계	209,141,529	6,274,24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861,596	1,615,8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890,096	2,006,7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389,837	2,651,695
기타특별회계	83,599,282	2,507,978
주택사업특별회계	3,675,111	110,25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893,390	146,8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	9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072,050	92,162
교통사업특별회계	17,092,752	512,78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592,277	797,76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8,243,702	847,31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69,00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